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17 선고 2015가합559498 판결 [구상금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 신용보증기금

피고 1. 주식회사 A

2. B

3. 주식회사 넥스플러스

4. 망 C의 소송수계인 D

5. 망 C의 소송수계인 E

변론 종결 2016. 3. 4. (피고 주식회사 A, B에 대하여)

2016. 4. 22. (피고 주식회사 넥스플러스에 대하여)

2016. 5. 20. (피고 D, E에 대하여)

판결 선고 2016. 6. 17.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77,918,195원 및 그 중 1,291,532,760원에 대하여 2015. 9. 3.부터, 85,873,170원에 대하여 2015. 9. 10.부터 각 2015. 11. 20.까지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B과 피고 주식회사 넥스플러스 사이에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6. 3.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3. 가. 피고 B과 망 C 사이에 별지 부동산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6. 16.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 나. 피고 B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 중 망 C의 소송수계인인 피고 D은 3/5

지분에 관하여, 망 C의 소송수계인인 피고 E는 2/5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5.

6. 17. 접수 제12926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 주식회사 A, B에 대한 청구

가.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주식회사 넥스플러스에 대한 청구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1) 인정사실 ① 원고는 2008. 10. 17.부터 2014. 5. 23.까지 4회에 걸쳐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 또는 주식회사 F(2013. 12. 30. 피고 A으로 흡수합병되었다)이 중소기업은행 또는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기업자금을 대출받을 때 위 회사들과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위 은행들에게 위 회사들을 위하여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다. 피고 A과 주식회사 F은 위 각 신용보증서를 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대출받았다.

② 피고 B은 피고 A의 대표자 사내이사로서 위 각 신용보증약정 체결 당시 원고에게 피고 A 및 주식회사 F의 각 신용보증약정 상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③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6조(사전구상)

① 본인(피고 A 또는 주식회사 F)에 대하여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때에는 본인과 연대보증인(피고 B)은 신보(원고)로부터의 통지, 최고가 없더라도 신보가 보증하고 있는 금액에 대하여 사전상환채무를 부담합니다.

1. 제5조(신보가 신용보증한 주채무의 이행의무)를 위반한 때

4.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대위변제·대지급·부도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의 등록 사유가 발생한 때

제10조(상환범위)

① 신보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즉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환하기로 합니다.

1. 보증채무이행금액

2. 제1호의 금액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신보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

3. 보증채무이행에 든 비용

4.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6. 제3호와 제4호의 지급금액에 대하여 각 비용의 지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신보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지연배상금

④ 피고 A은 2015. 7. 3. 폐업하였고, 각 대출원리금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원고는 2015. 9. 3. 중소기업은행에 1,292,826,540원, 2015. 9. 10.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85,873,170원의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하였다. 한편,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률은 연 12%이다.

⑤ 결국, 피고 B이 연대보증인으로서 위 각 신용보증약정 제10조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게 된

채무의 액수(대위변제금, 채권보전비용, 각 금액에 대한 약정손해금 등에서 일부 변제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는 합계 1,377,918,195원이다.

⑥ 피고 B은 2015. 6. 3. 피고 주식회사 넥스플러스(이하 '피고 넥스플러스'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넥스플러스에게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5. 6. 4. 접수 제105325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위 등기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인하여 말소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위 1,377,918,195원 상당 구상금 채권이 그 피보전채권이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2015. 6. 3. 체결된 사실, 피고 A은 그 이후인 2015. 7. 3. 폐업한 사실, 원고가 2015. 9. 3. 피고 A의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한 사실은 앞에서 본 것과 같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에는 원고의 피보전채권(사전구상권 포함)이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이미 원고의 구상금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고, ② 그로부터 불과 한 달만에 피고 A이 폐업한 점, 갑 제6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A이 중소기업은행에게 2015. 6. 5.부터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구상금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③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원고의 구상금 채권이 성립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위 1,377,918,195원 상당의 구상금 채권도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피고 B의 재산 상태

1) 적극재산 갑 제9, 12 내지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별지 부동산 목록 표시 각 부동산과 화성시 G 전 15㎡를 소유하였던 사실, 당시 ①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559,000,000원, ② 별지 부동산 목록 표시 제2항 기재 부동산의 가액은 151,855,000원, ③ 별지 부동산 목록 표시 제3항 기재 부동산(지분)의 가액은 3,594,717원, ④ 위 G 전 15㎡의 가액은 4,617,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 가액의 합계는 719,026,717원이다.

한편,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물상담보로 제공되어 있다면, 물상담보로 제공된 부분은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물상담보에 제공된 재산의 가액에서 다른 채권자가 가지는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만을 채무자의 적극재산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64792 판결 등 참조). 갑 제9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 B이 2010. 5. 24.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300,000,000원을 대출받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360,000,000원을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서 위 피담보채권액 300,000,000원을 공제한 잔액만을 피고 B의 적극재산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결국,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피고 B의 적극재산은 합계 419,026,717원(= 719,026,717원 - 300,000,000원)이었다.

2) 소극재산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 피보전채권인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구상금 채권도 피고 B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채무의 액수는 대위변제금 상당 구상금의 원금만 해도 1,378,699,710원(=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위변제금 1,292,826,540원 +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대위변제금 85,873,170원)에 이르는 사실은 앞에서 본 것과 같다.

따라서 피고 B의 다른 소극재산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피고 B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다고 볼 것이다.

다. 사해행위 성립 여부

어느 특정 채권자에 대한 담보제공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채무자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을 것과 그 채권자에게만 다른 채권자에 비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다른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을 그 요건으로 하며, 특정 채권자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그 담보물이 채무자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경우에 한하여만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5다47106, 47113, 4712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 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넥스플러스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고 넥스플러스가 다른 채권자에 비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라. 피고 넥스플러스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일로부터 불과 한 달 후인 2015. 7. 3. 피고 A이 폐업한 점, 피고 B이 피고 A의 대표자로서 피고 A의 자금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채무자인 피고 B의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수익자인 피고 넥스플러스의 악의는 추정된다.

피고 넥스플러스는 2015. 1.경까지 피고 A에게 핸드폰 부품을 공급하였고, 그 물품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자신이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한다. 그러나 피고 넥스플러스의 악의 추정을 번복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다. 따라서 피고 넥스플러스의 선의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소결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고 D, E에 대한 청구

가.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①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5. 11. 9. C가 사망하였고, 그 상속재산 중 3/5 지분을 상속한 배우자 피고 D과 2/5 지분을 상속한 아들 피고 E가 소송을 수계하였으므로, 피고 D, E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와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구한다'는 부분을 추가하고, ② C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을 구하는 부분을 삭제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서민석

판사김건우

판사지혜선

별지